

[신한 Wink스탁론 계좌운용 규칙]

2018.

◆ 일반적인 거래규칙

1. 매매 및 금융거래시간

1) 매매가능시간 및 유형

구 분	매매가능여부	비 고
장전시간외종가 (07:30~08:30)	매수/매도 가능	-반대매매실행일(로스컷실행일)은 장전시간외종가 매도만 가능
동시호가/장중거래 (08:00~15:30)	매수/매도 가능	
장후시간외종가 (15:30~16:00)	매수/매도 가능	
시간외단일가 (16:00~18:00)	매매불가	

- 주문가능유형: 지정가, 시장가 주문만 가능
 - 조건부지정가/최유리지정가/최우선지정가/IOC/FOK 주문불가
 - 예약매매, 스탑로스 등 특수주문 불가

2) 금융거래시간

업무구분	거래시간	비 고
대 출(입금)	08:30 ~ 16:00 까지	증권사 영업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
이 자(출금)	15:30	일부 출금 방식 인출 전 담보비율 조건 미충족 시 인출불가
부분상환/중도해지(출금)	08:00 ~ 16:00 까지	전액 출금 방식, 부족 시 상환 불가
만기상환(해지)(출금)	16:30부터	부분 출금 가능
로 스 컷(출금)	15:30부터	원금/이자 일괄청구방식, 부분 출금 가능

- 3) 수확능력시험, 개장/폐장 등의 사유로 인한 거래소 매매시간 변경 시, 금융거래시간(반대매매시간 포함)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능종목 및 유형

1) 거래가능종목

- 매수가능종목: KOSPI, KOSDAQ 상장 일반종목 및 ETF종목 중 매수가능으로 지정된 종목
- 매도가능종목: KOSPI, KOSDAQ 상장 일반종목 및 ETF종목

2) 거래불가종목(매매 및 평가불가 종목)

제3시장(KONEX)상장주식, 투·융자회사, 수익증권, 신주인수권, 채권, ELW, ETN, 비상장종목 등 거래가능 종목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

3) 거래유형

100% 현금거래만 가능 (신용거래/공매도/미수거래 불가)

3. 담보비율산정 및 주요담보비율

1) 담보비율산정

(1) 산정식

- $\text{계좌담보비율} = \text{계좌평가금액} \div \text{대출원금}$
- $\text{계좌평가금액} = \text{주식잔고평가금액} + \text{예수금}$
 $\Rightarrow \text{주식잔고평가금액} = \text{장중실시간 보유주식수} \times \text{현재가}$
 $\Rightarrow \text{예수금} = \text{D+2일 예수금 (대출금 입금 시, 예수금에 포함됨)}$

(2) 기타사항

- ① 거래가능종목 중 매수/보유금지에 해당하는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신청 및 현금인출 시 계좌평가금액에서 해당종목의 평가금액은 제외됩니다.
- ② 거래가능종목 중 '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에 해당하는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신청/현금인출/신규매수 시 계좌평가금액에서 해당종목의 평가금액은 제외됩니다.
- ③ 거래불가종목 보유하는 경우, 모든 평가에서 해당종목의 평가금액은 제외됩니다.

2) 주요담보비율

로스컷발생 담보비율	로스컷예고 SMS발송	로스컷 상환유예비율	이자인출 담보비율	연장가능 담보비율	현금인출 담보비율
125%	125%/128%/ 130%	130%	인출 전 126% 초과	130%	140%

※ 항목별 담보비율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한조건 등은 반드시 상세내역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거래제한

- 대출신청 시 [보유불가종목] 또는 [거래불가종목] 보유: 대출이 불가하며, 해당종목 매도 또는 출고 후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시 [매수불가종목] 보유: 대출은 가능하나, 해당종목은 계좌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계좌에 [보유불가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 매수불가/보유불가 지정시점은 증권사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출계좌에서는 해당종목의 신규매수가 제한됩니다.

1) 매수불가/보유불가 종목

매매제한종목	매수	보유	비 고
①관리종목	불가	불가	☞ 보유 시 반대매매 실행
②거래정지예정종목	불가	불가	☞ 보유 시 반대매매 실행

③권리락 종목(배당락 제외)	불가	불가	☞ 보유 시 반대매매 실행
④감자/합병/액면분할/병합종목 등	불가	불가	☞ 보유 시 반대매매 실행
⑤정리매매종목	불가	불가	☞ 보유 시 반대매매 실행
⑥투자주의/환기/경고/위험/단기과열종목	불가	-	☞ 일별조회
⑦액면가 이하 종목	불가	-	☞ 전일기준
⑧시가총액 100억 미만 종목	불가		☞ 전일기준
⑨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불가	-	☞ 전일기준
⑩신규상장종목	불가		☞ 상장일에 한함
⑪최근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불가	-	☞ 전일기준
⑫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불가	-	☞ 이유없는 시세급변만 해당
⑬5일 평균거래량 1천주 미만 종목	불가	-	☞ KOSPI200, KRX100 제외
⑭보호예수 해제 종목	불가	-	
⑮권리발생 예정종목	불가	-	☞ 유증, 감자 등 예정종목 ☞ 반대매매예정일 5일전부터
⑯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	불가	-	☞ 매수거래정지 참조
⑰5일 평균거래대금 5천만 원 이하	불가		
⑱금융사 지정(RMS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불가		☞ 지정 후 즉시

■ 금융사 매수불가종목 지정사유 예시

- ①스탁론 이용 전체고객의 보유수량 합계가 해당종목 총상장주식의 1% 이상인 경우(단일종목집중제한)
 - ②연속적자 발생/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관련 종목
 - ③횡령/배임 등 발생기업관련 종목
 - ④기타 이상급등락 등 고객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관련 종목
- ※ 금융사 지정 매수불가종목 설정 기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거래제한

(1) 포트폴리오제한

동일종목당 매수가능금액은 계좌평가금액의 최대 100% 까지 가능합니다.

(2) 매수거래정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의 신규매수가 제한됩니다. (매도가능)

① 매수동결제한

장 중 담보비율이 로스컷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매수불가(로스컷 담보비율 초과 시 매수가능)

② 로스컷계좌제한

로스컷(반대매매) 실행 후 담보비율이 로스컷 상환유예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현금입금, 일부상환 등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로스컷 상환유예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가능

⇒ 단, 대출해지유예기간(로스컷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정규장 마감 전) 내에 담보비율 상승시킨 경우만 매수가능

③ '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 보유계좌제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발생, 워크아웃, 법정관리신청, 채권단관리절차개시 등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조치 종목('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 이라 함)을 보유한 경우, 해당종목의 평가 금액을 제외한 담보비율이 로스컷 담보비율 이하인 경우

(3) 동일종목매수제한

특정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본 상품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량을 해당종목 총 상장주식수의 1% 이하로 제한합니다.

(4) 유동성제한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 이상은 매수가 금지됩니다.

⇒ 신규등록주의 경우 등록 후 4일까지는 해당일수만큼의 평균거래량을 기준으로 함

(5) 권리행사제한

- 대출계좌는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청구, 유상증자청약 등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 대출계좌는 주식담보대출, 주식대여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질권설정 또는 계좌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불가)

◆ 자동반대매매 규칙

1. 자동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

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	자동반대매매 시기	비 고
① 전일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하이고, 당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하인 경우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대출원리금 확보에 필요한 금액만큼 반대매매 ('로스컷/금융기관강제해지' 참조)
②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 이익 상실) 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강제해지 실행 즉시	
③ 관리종목으로 편입예정 또는 편입된 종목	편입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④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 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⑤ 거래정지로 편입 예정된 종목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⑥ 주식병합/주식분할, 감자,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정리매매시작일	

■ 정리매매종목 주문가격: 최저호가(1원)

■ 권리락 및 합병/분할, 액면변경, 감자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SMS(④, ⑥만 해당): 반대매매실시 전 2회 발송 (1일전 및 3일전)

2. 로스컷/금융기관강제해지

1) 반대매매 발생사유

(1) 로스컷 반대매매

전일 정규시장 종가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 담보비율 이하이고, 당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을 로스컷 담보비율 초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오전 동시호가(08시45분) 시간에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 실행

(2) 금융기관 강제해지 반대매매

여신기관에서 대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 등) 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제3자가 증권계좌에 (가)압류 조치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대출고객 사망 등 대출유지가 곤란한 경우

⇒ 대출 해지사유 발생 후 여신기관에서 강제해지 실행 즉시 반대매매 실행

2) 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1) 반대매매 금액: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예수금 충족에 필요한 금액

(2) 반대매매 수량: 반대매매 실행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계산

(3) 반대매매 순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반대매매 실행

1순위) 매수/보유불가종목

2순위) 시가총액 상위종목(전일기준)

(4) 기타사항

- 거래정지/하한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대매매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순위 종목이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 반대매매는 장중, 장후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거래를 통해,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 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 반대매매(로스컷/금융기관강제해지)이 실행된 계좌는 계약해지 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계좌에 주식(현물)입고되는 경우,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 반대매매가 실행되므로, 주식(현물)입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로스컷 반대매매 경고 SMS

(1) 실시간 담보비율이 하락하여 로스컷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경고 SMS가 발송됩니다.

- 장 중 실시간: 로스컷예고SMS 담보비율 도달 계좌를 대상으로 발송
- 18시 00분 : 로스컷 담보비율 이하인 고객 전체에게 발송
- 07시 30분 : 로스컷 반대매매 대상고객 전체에게 발송
-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 즉시: 반대매매 실행 통지 SMS 발송

(2) 기타사항

- 장중 실시간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SMS발송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정상계좌를 대상으로 발송되며, 이미 로스컷 또는 금융기관강제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로스컷예고SMS는 로스컷 반대매매 대상계좌에게만 발송되며, 금융기관강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객은 금융기관(당사 및 여신기관)에 항상 최신의 연락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락처 미갱신, 수신거부(스팸처리 등), SMS미확인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발생 및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기타사항] 참조)

3. 로스컷 상환유예

- 1) 로스컷 발생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담보비율을 상승시키는 경우 계좌를 정상계좌로 부활시키는 [로스컷 상환유예]제도가 적용됩니다.
- 2) 로스컷 상환유예 적용대상 및 방법
 - (1) 적용대상: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로스컷 발생계좌 (금융기관강제해지 계좌는 미적용)
 - (2) 상환유예기간: 로스컷 발생일(D일) ~ D+5영업일 정규장 종료 전 까지(15:30까지)
 - (3) 계좌부활기준: 상환유예기간 내에 현금입금, 일부상환 등으로 담보비율을 로스컷 상환유예비율 이상으로 상승 시키는 경우 (단, 현물입고제외)
- 3) 로스컷 상환(해지)
 - (1) 로스컷 상환유예기간 내에 계좌를 부활시키지 않는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이 이루어집니다.
 - (2) 로스컷 상환유예기간 중 고객이 직접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홈페이지 이용)
 - (3)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 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해 주셔야 하며, 손실금액 미입금 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 대출약정 설정/해지 조건

1. 약정체결 전제조건

1) 대출가능계좌

- ① 개 인: 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
- ② 연령제한: 만 20세 이상(미성년자 대출 불가)
- ③ 신용등급: 1~7등급 해당고객
단,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대상자 등 제외
⇒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 ④ 계좌당 3억원 이내에서 대출 신청하는 고객(1인당 당사여신한도금액 총 3억원 이내)
- ⑤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 ⑥ 증권계좌에 대해 질권설정 신청한 고객

- ⑦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금융질서문란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⑧ 증권계좌 내, 거래불가종목 및 보유불가종목이 없는 고객(보유 시 매도 또는 출고 후 약정신청 가능)

2) 질권설정방식

대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전자서명)

2. 대출조건

1) 대출금리

상품구분	신규금리	연장금리	대출기간	연장주기	이용가능기간
집중상품	5.9%	5.9%	1년	1년 단위	최대 5년

- 연장금리는 연장시점의 여신기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한도

(1) 대출신청가능금액: 최소 100만원 ~ 최대 3억원

(2) 대출가능비율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담보평가금액	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300% 이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250% 이내
1억원 초과	계좌평가금액의 200%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300%를 대출하는 경우 주가하락으로 인한 로스컷반대매매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계좌담보비율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수수료 및 연체금리

(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 인지세 (인지세법 제 3조 제3항)

대출금액	세액	비 고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인지세의 50%는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함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인지세는 신규대출 및 증액대출 실행 시 부과됩니다.

(신규대출=대출금에서 차감 후 대출금입금 / 증액대출=계좌 내 보유 현금에서 출금)

(3) 연체금리:

① **약정이자 + 3%**

3. 대출해지

1) 해지사유

- (1) 약정만기일 도래: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 (3) 여신거래기본약관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4) 담보비율이 로스컷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로스컷 처리 된 경우
- (5) 기타 강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계좌
- (6)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2) 기타사항

- (1) 대출해지/원리금상환과 동시에 스탭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2)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주)씽크풀(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이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씽크풀은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인출/증액/일부상환/연장조건 등

1. 인출/입고/출고

1) 현금인출

-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출 가능
 - ① 인출 후 담보비율이 [현금인출 담보비율]을 초과해야 함
 - ② D+2일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인출가능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입고

(1) 입고가능여부

자사입고	가능
타사입고	불가

(2) 기타사항

- 거래가능종목 중 정상종목만 입고 가능합니다. (매수/보유불가종목 입고불가)
- 거래불가종목 및 현물은 입고 불가합니다. (입고 시 매매 및 평가불가)
- RMS의 제어를 받지 않고 보유불가종목을 입고하는 경우, 해당종목은 자동반대매매 처리됩니다.
- 입고 전 반드시 HTS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보유불가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출고 : 불가

2. 추가대출/증액대출

1) 한도 내 추가대출

(1) 추가대출신청: 대출홈페이지 이용

(2) 추가대출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① 추가대출 후 담보비율이 133% 이상이어야 함

⇒ 담보비율 산정 시 매수불가 종목은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 됨

②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금액 이하여야 함

③ 계좌 내 보유불가종목이 없어야 함

2) 한도증액대출

(1) 증액대출신청: 대출홈페이지 이용

(2) 증액대출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② 증액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증액대출가능금액 = (계좌평가금액 - 대출잔액) X 대출가능비율 - 증액 전 대출한도설정금액

⇒ 계좌평가금액 산정 시, 매수불가종목은 제외 됨

⇒ 대출잔액이란 한도증액 실행 전 대출잔액을 의미함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대출조건] 참조)

(3) 감액대출: 한도감액은 불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① 대출금리: 변동 없음(증액대출 실행 전 적용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② 대출만기: 변동 없음(최초 대출 만기일자와 동일)

3. 일부상환

1) 일부상환신청: 대출홈페이지 이용

2) 일부상환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① 일부상환금액 및 이자금액을 인출가능 현금으로 보유

② 일부상환 후 담보비율 상승

4. 연장

1) 연장신청: 연장조건 충족 시 자동연장

2) 연장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①~⑦ 해당 고객
- ② 증권계좌담보비율 [연장가능담보비율] 이상인 고객
- ③ 증권계좌 내에 만기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

3) 기타사항

- ①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② 연장 처리 시 이자금액이 전액 인출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 부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장 전 계좌 예수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자연체, 신용조건 미달, 연락두절 등)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당계좌에 대한 사용제한(신규매수불가/인출불가) 또는 반대매매가 실행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④ 연장이 부결(거절)된 경우 익영업일 반대매매가 실행되며, 상환완료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상환 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⑤ 연장 시 대출조건(이자율 등)은 금융기관의 사정과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한캐피탈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1. 연락처제공의무

고객은 스탭론 계좌 운용을 위한 중요정보(담보비율, 반대매매 안내, 이자연체, 만기연장 등)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항상 최신의 연락처정보를 금융기관(당사및 대출여신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자연체, 반대매매발생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와 대출여신 기관 모두의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2) 금융기관에 담보물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출·연장·주식신규매수·인출거래 등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이용제한

- 1)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하여,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는 스탭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주식신규매수·인출거래 제한)
- 2)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스탭론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반대매매 및 계좌강제해지 등의 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스탁론 이용목적 위반 예시]

- ① 타인명의를 이용한 계좌 운용

- ② 복수계좌를 이용한 대규모 담보대출
- ③ 기타 시세조정을 위한 대출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 해당 계좌운용규칙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